

地方債(借入金)發行同意(案)

의안번호	208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1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☐ 提案理由

-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동사 신축비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, 사업 시행코자 함.

2. 主要内容

- 다대2동사 신축비 기채 : 100백만원(청사정비기금)

1993年度 地方債 發行 同意(案)

1. 根 據：地方自治法 第115條 및 同法 施行令 第45條

2. 對象事業：多大2洞舍 新築

3. 發行計劃

(단위 : 백만원)

발행금액	차입선	발행조건	차입시기	상환재원
100	지방재정공제회 (청사정비기금)	연리 3%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	93. 12	지방비(구비)

4. 事業計劃

○ 사업목적 : '92분동에 따른 청사 확보

○ 사업개요 및 재원 확보 상황

(단위 : 백만원)

공종별	사업개요	사업비		
		계	지방비(구비)	지방채
계		790	690	100
건축비	철근콘크리트 2층 1,026㎡	360	260	100
토지매입비	토지 661㎡	430	430	—